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77
----------	-------

발의연월일 : 2026. 4. 28.

발 의 자 : 위성곤 · 이건태 · 허영
박희승 · 이연희 · 박정현
박지혜 · 윤준병 · 이개호
서영교 의원 (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

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을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의 계급 체계를 적용함(안 제3조).

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5조 및 제34조).

라.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고, 경정 이하의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결합력을 강화함(안 제7조).

마.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상호 채용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인사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치안 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함(안 제10조 및 제15조).

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되는 복제를 착용하도록 하되,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신분 이동 시에도 계급정년을 합산 산정하여 신분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32조).

사.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국가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치안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경찰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특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자치경찰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정직공무원을 말한다.
3.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4. “전보”란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용 및 계급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공무원

치안총감(治安總監)

치안정감(治安正監)

치안감(治安監)

경무관(警務官)

총경(總警)

경정(警正)

경감(警監)

경위(警衛)

경사(警査)

경장(警長)

순경(巡警)

2. 자치경찰공무원

자치치안정감(自治治安正監)

자치치안감(自治治安監)

자치경무관(自治警務官)

자치총경(自治總警)

자치경정(自治警正)

자치경감(自治警監)

자치경위(自治警衛)

자치경사(自治警査)

자치경장(自治警長)

자치순경(自治巡警)

제4조(경과 구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 경과(警科)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가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용권자) ①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1. 총경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2. 경정 이하의 국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1. 총경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다만, 자치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2. 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직위해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하고, 자치경찰대장의 직위해제는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례로써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제9조(벌금형의 분리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 제7호 또는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② 경위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한다)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정하여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8.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에 따라 해당 시·도자치경찰본부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경위공개 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채용시험, 승진 시험 또는 그 밖의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③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게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이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기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수가 결원 수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해당 기관의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로 보아 해당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시보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

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및 이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15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① 경찰청

장과 시·도지사는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시·도 자치경찰 상호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 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사·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

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시·도자치경찰본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1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

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제24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제2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제29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3.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시·도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면직시킬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로 한다.

제31조(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①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4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32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제33조(고충심사위원회)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경찰공무원

의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국가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며, 상담 및 심사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국가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징계의 절차)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

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는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제1항에 따른다.

제36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피고로 하고, 자치경찰공무원

의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임용권자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제37조(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교육훈련 중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제3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③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및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제60조,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71조제7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3호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39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에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6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말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26조 또는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1항(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한 경찰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같은 법 제45조(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2조 또는 같은 법 43조를 말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말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중 “국가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 해양경찰

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종전 「경찰공무원법」 부칙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부칙 중 이 법 시행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시행 후에도 해당 부칙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